

이선봉묘역 (기념물 제53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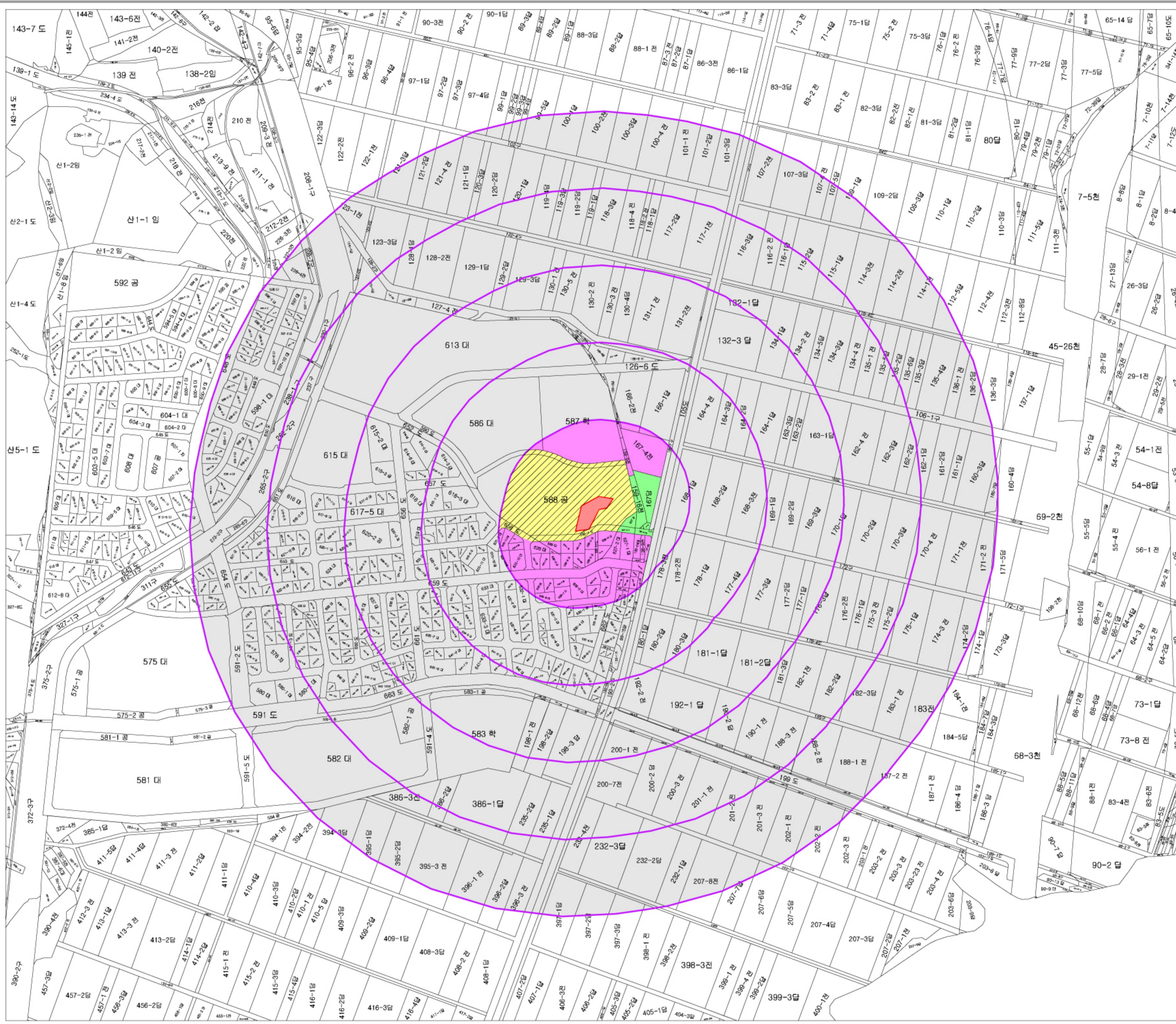
현상변경허용기준

도례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부	경사지부 (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지영보존 -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여용 - 기존 건축물은 개축여용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높이 10m 이하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높이 19m 이하
그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반경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신청시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건장 위험률 저감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발 신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벽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냉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규제사항



■ SCALE : 1/5,000(A3)

0 50 100 250m

